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한신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3007호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8월 11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2. 제 안 이 유

-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상위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규정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“피학대동물”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)

나.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(안 제26조 신설)

다. 동물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함(안 제27조 신설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‘동물보호정보시스템’의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반려동물 양육 시민이 급증하면서 동물학대, 동물유실·유기,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함에 따라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) 개정('22.4.26)을 통해 ‘동물학대 금지’, ‘맹견 사육허가 및 기질평가’, ‘사육포기 동물 인수’, ‘실태조사’, ‘동물보호정보 수집 및 활용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.
- 동 조례는 법 개정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‘실태조사’ 및 ‘동물보호 정보 수집 및 활용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, 이를 반영하여 동물 보호·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 없음.
- 세부적으로 안 제26조는 ‘반려동물’, ‘유실·유기동물’, ‘피학대동물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성 있는 관련 조사(자료·현장·시민인식 등)를 통해 효율적인 동물 보호·복지 시책의 수립·시행이 기대됨.
- 안 제27조는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4항¹⁾을 근거로 국가동물정보시스템²⁾에 등록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·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 정보를 수집·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1) 제95조(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) 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 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정보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
2) 제95조(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